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00호 2022. 7. 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80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2-81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4
- 정선군 고시 제2022-83호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7
- 정선군 고시 제2022-84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9
- 정선군 고시 제2022-87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31
- 정선군 고시 제2022-89호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36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733호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44
- 정선군 공고 제2022-734호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65
- 정선군 공고 제2022-735호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71
- 정선군 공고 제2022-736호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공람
· 공고.....76
- 정선군 공고 제2022-818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운영안 입법예
고.....7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80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3-294호(1973. 7. 12.)로 최초 결정 및 강원도 고시 제2009-285호(2009. 8. 21.)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2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개설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면적	금회시행	
도로	소로2-47호	L=140m B=8m	-	L=9.5m B=8.5m	
도로	중로2-2호	L=240m B=15m	-	L=240m B=8.5m	
광장	교통광장	-	A=1,812㎡	A=1,145㎡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정선군수(건설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변경)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1.12.31.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불임(변경없음)

◎ 토지조서(소로2-47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직전리	548-5	전	1,020	10		정선군			
2	사북읍 직전리	548-3	전	1,341	56		정선군			
계				2,361	66					

◎ 토지조서(중로2-2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직전리	521-1	전	5,156	1,405		정선군			
2	사북읍 직전리	산223-6	임	4	4		정선군			
3	사북읍 직전리	613	천	89,718	394		(국)건설부			
4	사북읍 직전리	산223-5	임	32	32		정선군			
5	사북읍 직전리	529-65	전	1,163	881		정선군			
6	사북읍 직전리	527-3	창	287	174		정선군			
7	사북읍 직전리	527-4	전	95	63		정선군			
8	사북읍 직전리	527-5	창	131	69		정선군			
9	사북읍 직전리	529-64	전	81	57		정선군			
10	사북읍 직전리	548-6	전	86	42		정선군			
11	사북읍 직전리	549-2	전	1,086	485		정선군			
계				97,839	3,606					

● 토지조서(교통광장)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사북읍 직전리	549-1	전	725	4	정선군 사북읍 직전로 261-18	금성영농조합법인			
2	사북읍 직전리	549-2	전	1,086	281		정선군			
3	사북읍 직전리	548-5	전	1,020	781		정선군			
4	사북읍 직전리	548-3	전	1,341	79		정선군			
계				4,172	1,145					

● 지장물조서

순번	물건의 표시							소유자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1	사북읍 직전리	527	창	창고	함석	194.77	㎡	나국주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261-17	

정선군 고시 제2022-81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정 선 군 수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정선로1R	-	전용차로	정선군	북설리 775-1	북설리 757-1	0.90	2.4	-	기존노선 신규지정
정선로1L	-	전용차로	정선군	북설리 708-2	북설리 775-1	0.40	2.4	-	기존노선 신규지정
남평강변로	-	겸용도로 (비분리형)	정선군	남평리 594-1	남평리 995-1	0.75	3	-	기존노선 신규지정
백두대간로	-	겸용도로 (분리형)	정선군	봉산리 241-66	봉산리 712	2.41	1.4	-	기존노선 신규지정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종점과 연결한 지번을 적는다.
4.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한 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에는 1개의 노선으로, 양쪽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노선으로 각각 구분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를 작성한다.

자전거도로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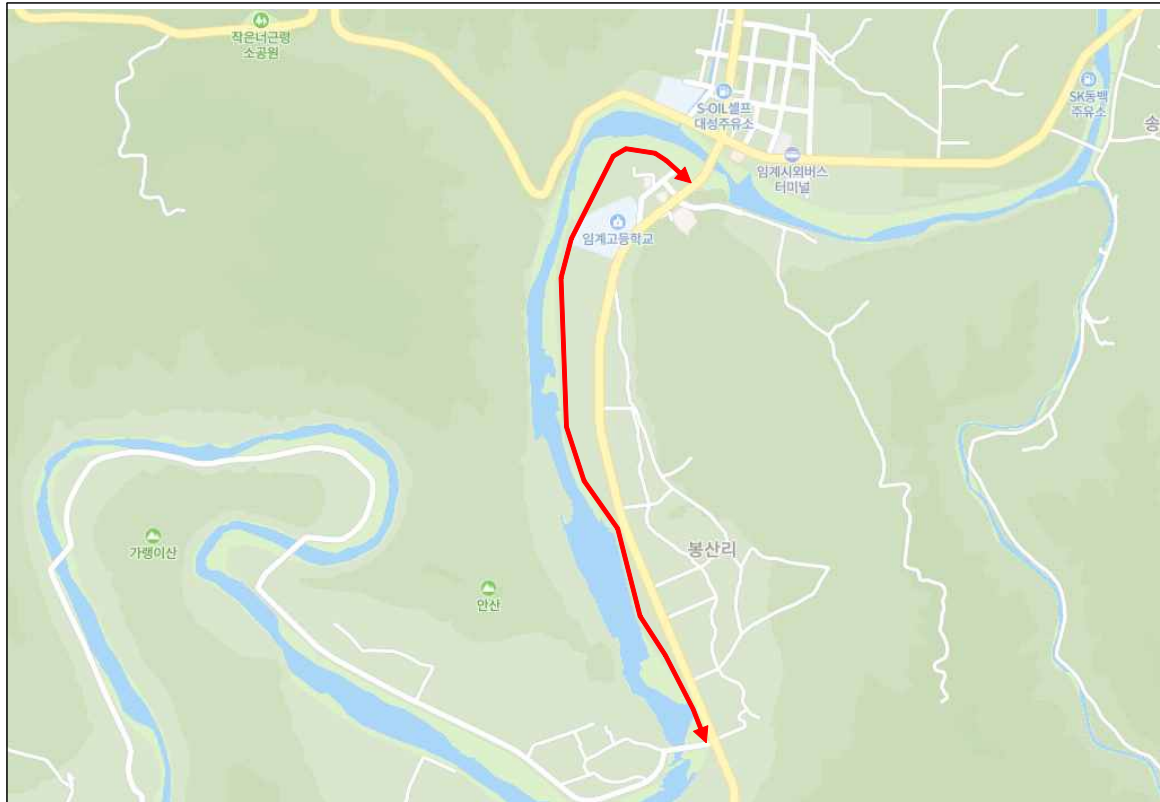
□ 정선군 정선읍



□ 정선군 북평면



□ 정선군 임계면



노선명 : 백두대간로(자전거
겸용도로-분리형)

연장 : 2.41km

구간 : 봉산리 241-66 ~ 봉산리 712

정선군 고시 제2022-83호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5-174호(2005. 7. 22.)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15-72호(2015. 9. 22.)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7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사업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시행	
공원	어린이공원	1,526㎡	■어린이공원 조성 A=1,526㎡ - 기 반 시 설 : 660㎡ - 휴 양 시 설 : 30㎡ - 유 희 시 설 : 74㎡ - 녹지 및 기타 : 762㎡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봉양리	34-68	대	62	11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91-28	대	42	27		정선군			
3	정선읍 봉양리	72-3	대	549	533		정선군			
4	정선읍 봉양리	72-4	도	6,564	3		정선군			
5	정선읍 봉양리	73-2	장	964	952		정선군			
계				8,181	1,526					

정선군 고시 제2022-84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2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선(건축한계선) 위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라.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사북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68,920	강고 제77호 (2002.4.8)	
기정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68-3철 일원	56,410	강고 제77호 (2002.4.8)	
기정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44-2대 일원	96,779	강고 제77호 (2002.4.8)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계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	보전녹지
합 계	222,109	29,081	189,165	1,251	2,612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68,920	-	68,920	-	-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56,410	-	56,410	-	-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96,779	29,081	63,835	1,251	2,61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2	1,702	-	-	5	735	7	967
대로	-	-	-	-	-	-	-	-
중로	7	1,268	-	-	2	588	5	680
소로	5	434	-	-	3	147	2	287

(2)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8.5	주간선 도로	7,230 (330)	중로 1-3 고한리 373-2대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0-35임	일반 도로	고한초교	강고83호 (02.4.15)	
기정	중로	2	4	17	보조간 선도로	258	2호 광장 사북리 356-9대	중로 3-5 사북리 356-14대	일반 도로	스카이 호텔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25)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23	중로 2-4 사북리 356-31대	중로 3-1 사북리 351-32도	일반 도로	사북 새 마을회관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10	12	보조간 선도로	645 (288)	중로 1-1 사북리 381-2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1-18도	일반 도로	사북1교	강고74호 (91.6.18)	
기정	중로	3	12	9~ 13	국지 도로	57	소로 1-4 사북리 356-241도	중로 2-4 사북리 356-6도	일반 도로	호텔인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13	14	국지 도로	187	중로 3-12 사북리 354-8대	중로 3-10 사북리 354-11도	일반 도로	동원 복지회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5	중로 3-5 사북리 351-36대	중로 3-7 사북리 351-4대	일반 도로	-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72	중로 3-13 사북리 354-34대	1호 공공공지 사북리 354-30대	일반 도로	-	강고98호 (05.5.13)	
기정	소로	2	54	8.5	국지 도로	349 (30)	소로2-53 사북리 345전	광장1 사북리 345전	일반 도로	-	정선고110호 (20.5.22)	
기정	소로	3	5	6.5	국지 도로	314 (121)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0-35임	중로 2-4 사북리 354-21대	일반 도로	-	정선고29호 (02.5.16)	
기정	소로	3	36	4	국지 도로	166	중로 2-4 사북리 356-27	중로 2-4 사북리356-119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	사북 지장천변 3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3,103	정선고 제29호 (02.5.16)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국도38 사북1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0대 일원	9,081 (1,125)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2	하이원 진입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6-2도 일원	4,084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9	사북3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1-36대 일원	175	강고 제300호 (03.12.13)	

라.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공공공지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2,515	강고 제98호 (05.5.13)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6	1,414	1	389	2	479	3	546
중로	4	976	-	-	1	430	3	546
소로	2	438	1	389	1	49	-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	15	보전선 도로	462 (430)	중로 3-1 사북리 산153-12임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74호 (91.6.18)	-
기정	중로	3	2	12	보전선 도로	903 (394)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30	중로 3-2 사북리 377-7철	소로 1-3 사북리 452-77도	일반 도로	경희 한의원	건고26호 (76.2.8)	-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22)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
기정	소로	1	3	8~ 12	국지 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시 장	강고26호 (79.2.8)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9	중로 3-1 사북리 산153-11임	중로 3-2 사북리 369-17대	일반 도로	사북역 전	강고26호 (79.2.8)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사북 역전1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66-72도 일원	1,404	강고 제300호 (2003.12.13)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광장	경관 광장	사북읍 사북리 452전 일원	781	정선고146호 (20.6.26)	지구단위 계획구역 (448㎡)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2	2,588	1	336	2	309	9	1,943
대로	1	106	-	-	-	-	1	106
중로	2	1,068	-	-	1	165	1	903
소로	9	1,414	1	336	1	144	7	934

(2)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 도로	106	중로 2-2 사북리 305-8대	중로 3-1 사북리 산77-3도	일반 도로	범바위골 진입부	강고173호 (78.12.7.)	
기정	중로	2	3	15	보조 간선 도로	1,720 (165)	대로 3-1 사북리 305-4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452-36도	일반 도로	사북역 중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2	7~ 12	보조 간선 도로	903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336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11도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144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3-4 사북리 307-1도	일반 도로	-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4	6~7	국지 도로	499 (82)	소로 3-3 사북리 452천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 산143-11입	일반 도로	-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29	6	국지 도로	227	소로 1-1 사북리 344-133대	중로 3-2 사북리 344-67대	일반 도로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3	33	6~7	국지 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3-29 사북리317-252도	일반 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68	중로 3-2 사북리 344-55대	소로 2-53 사북리 344-169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소로	3	37	4.5 ~6	국지 도로	202	중로 3-2 사북리 317-62대	소로 3-32 사북리 317-166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63	중로 3-2 사북리 317-266대	소로 2-53 사북리 313-47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기정	소로	3	39	4~6	국지 도로	201	중로 3-2 사북리 317-131주	소로 3-33 사북리 317-262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3,074	-	-
기정	20	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45-1전	1,160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21	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36대 일원	612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22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169대 일원	1,302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다.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사북읍 사북리 344-153중 일원	26,708 (3,912)	강고 제83호 (2002.4.15)	

라. 하천

(1)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 지					
기정	24	하천 (북일천)	소하천	사북읍 사북1리 18번지 일원	사북읍 사북1리 306-6번지 일원	-	5.6	9~ 20	110,183 (2,361)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 계획

1) 단위대지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거지역	◦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상업지역	◦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동건축	◦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2) 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 일부 맹지형 필지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여러 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3) 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위치 지정	

4)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 8m도로를 계획하여 연계통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 대상지 남측에 접하는 중로3-13호선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내로 폭원 4m의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조성 추가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B=4m)는 기부채납 ※ 용적률은 기준 500%, 허용 600% 층수는 15층(53m)이하, 건폐율 80%, 불허용도1, 권장용도A로 규제함 ※ 전면으로는 10m의 건축한계선을, 대상지 좌측2m 건축한계선을 계획함 - 단,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획지별 단일건축물로 일괄개발만 허용토록 한다.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A1	4,470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4,494	-
기정	A2	175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175	-
기정	A3	1,000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1,012	-
기정	A4	11,640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10,736	-
기정	A5	3,140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3,103	-
기정	A6	3,570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3,636	-
기정	A7	2,170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700	-
기정	A8	4,250	사북읍 사북리 356-93번지 일원	4,282	-
기정	A9	488	사북읍 사북리 367-6번지 일원	485	-
기정	A10	11,549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11,348	-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B1	1,650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1,650	
기정	B2	2,908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2,975	
기정	B3	8,168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8,561	
기정	B4	9,542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9,542	
기정	B5	1,235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1,404	
기정	B6	9,013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8,874	
기정	B7	5,700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6,754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C1	2,480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2,703	
기정	C2	3,147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3,147	
기정	C3	12,316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12,316	
기정	C4	4,516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4,516	
기정	C5	1,68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1,685	
기정	C6	12,218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12,237	
기정	C7	5,774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8,222	
기정	C8	13,195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13,650	
기정	C9	7,077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4,837	
기정	C10	193	사북읍 사북리 산77-6번지 일원	193	
기정	C11	163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163	
기정	C12	4,690	사북읍 사북리 산72-12번지 일원	4,690	
기정	C13	866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866	
기정	C14	456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456	
기정	C17	3,356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3,269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불허용도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전면 불허용도
1 일반 상업 지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창고시설 (100㎡ 이상)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 건축자재 관련업종 ◦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2 고한 1구역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창고시설 (100㎡ 이상) ◦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상 동
3 일반 주거 지역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창고시설 (100㎡ 이상)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 상 동

2)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	◦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시설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 전층권장용도

3) 건폐율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4)용적률

가.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율(%)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중심지 형성지역	400 ~ 500	500 ~ 600	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 ~ 400	350 ~ 500	-
주거지역	150 ~ 200	200 ~ 250	구 사북초등학교 주변

나. 용적률 완화적용(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허 용 용 적 률	공동 건축	규제사항	◦ 30%	-
		권장사항	◦ 40%	-
	경사지붕의 처리		◦ 20%	-
	경사지붕색채		◦ 10%	-
	건축한계선		◦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	-
	전층권장용도		◦ (권장용도 누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
	1층권장용도		◦ (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
	공개공지		◦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
	전면공지		◦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
	공동주차장 조성		◦ 기준용적률×0.1	-
상한용적률			◦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	-

* 주 : ‘경사지붕의 처리’ 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5) 높이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중심지 형성지역	12층 이하	-
기타 상업지역		
주거지역		

6) 배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이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전면도로에서 1m 삭제 : 오류정정)	
기정	A2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용 도	◦ 광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3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A5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블록 왼쪽면에서 2m	
기정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따른 삭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8	사북읍 사북리 356-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A9	사북읍 사북리 356-56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건 폐 율	◦ 80%	
			용 적 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1 / 권장용도 A(특별계획구역)	
			건 폐 율	◦ 80%	
			용 적 률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5층(53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전면도로에서 10m 등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B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B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오류사항 정정)	
기정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 500%, 허용 : 550%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 500%, 허용 : 550%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건축한계선 위치 일부 변경 (경미한 사항)
기정	B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B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 500%, 허용 : 500%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344-15학) 지정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불허용도 3 ○ 60% ○ 기준 : 200% 허용 : 250% ○ 12층(42m)이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불허용도 3 ○ 60% ○ 기준 : 200% 허용 : 250% ○ 12층(42m)이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불허용도 1 ○ 80% ○ 기준 : 400% 허용 : 500% ○ 12층(42m)이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 80% ○ 기준 : 400% 허용 : 500% ○ 12층(42m)이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 80% ○ 기준 : 400% 허용 : 500% ○ 12층(42m)이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보차혼용통로 및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 80% ○ 기준 : 400% 허용 : 500% ○ 12층(42m)이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10	사북읍 사북리 307-37번지 일원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불허용도 1 ○ 80% ○ 기준 : 400% 허용 : 500% ○ 12층(42m)이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 위치 및 조성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 대형필지

2) 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벽처리	◦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
옥외광고물	◦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 지주형 간판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
색채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
1층부 형태	◦ 개구부 통일성 유지 ◦ 투시형 서터 권장	-
조명	◦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
경사형 지붕	◦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
투수성 포장	◦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
보차혼용통로	◦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개공지	
기정	A2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3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정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A5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 차폐조경(B=2m),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기정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기정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8	사북읍 사북리 356-9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기정	A9	사북읍 사북리 35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 특별계획구역 ◦ 주차출입구,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전면공지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B1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B2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3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변경	B3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건축한계선 위치 변경 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경미한 사항)
기정	B4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B5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6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기정	B7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공개공지	
기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기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10	사북읍 사북리 307-37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정선군 고시 제2022-87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07-197호(2007.09.21.)로 최초 결정되어 강원도고시 제2007-241호(2007.11.09.)로 조성계획 승인, 정선군고시 제2020-31호(2020.02.14.)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 모평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7월 1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문화공원 내 실제 조성현황을 반영하고, 미시행 사업계획 폐지 및 문화공원 조성 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조정(명칭 변경)을 위해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

라.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도 열람이 가능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모 평 문화공원	문 화 공 원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119,830	-	119,830	강원도고시 제2007-197호 (2007.09.21)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모 평 문화공원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문화공원 내 실제 조성현황을 반영하고, 미시행 사업계획 폐지 및 문화공원 조성 목적에 적합한 시설 조정(명칭 변경)을 위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9,830	-	119,830	12	감)2	10	1,748	감)47	1,701	2,267	감)47	2,220	-
시 설 용 지	소계	53,059	감)474	52,585	12	감)2	10	1,748	감)47	1,701	2,267	감)47	2,220	-
	도로및광장	-	증)8,008	8,008	-	-	-	-	-	-	-	-	-	-
	휴양시설	14,517	-	14,517	-	-	-	-	-	-	-	-	-	-
	운동시설	1,169	-	1,169	-	-	-	-	-	-	-	-	-	-
	교양시설	13,871	감)176	13,695	4	감)2	2	938	감)47	891	1,457	감)47	1,410	-
	편익시설	8,779	증)805	9,584	4	-	4	136	-	136	136	-	136	-
	공원관리시설	13,716	감)8,942	4,774	4	-	4	674	-	674	674	-	674	-
	조경시설	1,007	감)169	838	-	-	-	-	-	-	-	-	-	-
녹지		66,771	증)474	67,245	-	-	-	-	-	-	-	-	-	-

2) 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기호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	-	-	119,830	-	119,830	1,748	감)47	1,701	2,267	감)47	2,220	-
시설계		-	-	-	53,059	감)474	52,585	1,748	감)47	1,701	2,267	감)47	2,220	-
도로 및 광장	도로	-	-	-	-	증)4,159	4,159	-	-	-	-	-	-	시설종류변경
	보도	-	-	-	-	증)2,726	2,726	-	-	-	-	-	-	시설종류변경
	도로소계	-	-	-	-	증)6,885	6,885	-	-	-	-	-	-	-
	입구광장1	-	r-1	16	-	증)426	426	-	-	-	-	-	-	시설종류변경
	입구광장2	-	r-2	16	-	증)474	474	-	-	-	-	-	-	시설종류변경
	입구광장3	-	r-3	16-6	-	증)223	223	-	-	-	-	-	-	시설종류변경
	광장소계	-	-	-	-	증)1,123	1,123	-	-	-	-	-	-	-
소계	-	-	-	-	증)8,008	8,008	-	-	-	-	-	-	-	
휴양 시설	야유회장	a	a	16	4,741	-	4,741	-	-	-	-	-	-	변경없음
	정자	b	b	16	21	-	21	-	-	-	-	-	-	변경없음
	야영장	c	c	16	9,755	-	9,755	-	-	-	-	-	-	변경없음
	소계	-	-	-	14,517	-	14,517	-	-	-	-	-	-	-
운동 시설	다목적운동장	d	d	16	1,169	-	1,169	-	-	-	-	-	-	변경없음
	소계	-	-	-	1,169	-	1,169	-	-	-	-	-	-	-
교양 시설	목재문화체험관	e-1	e-1	16	866	-	866	831	-	831	1,350	-	1,350	변경없음
	목공체험실	e-2	e-2	13	122	-	122	60	-	60	60	-	60	변경없음
	야외교육장	e-3	e-3	13	497	-	497	-	-	-	-	-	-	변경없음
	목공전시관	e-4	-	-	36	감)36	-	32	감)32	-	32	감)32	-	폐지
	트리하우스	e-5	-	-	36	감)36	-	15	감)15	-	15	감)15	-	폐지
	산림교육장	e-6	-	-	104	감)104	-	-	-	-	-	-	-	폐지
	목재놀이터	e-7	e-4	16	439	-	439	-	-	-	-	-	-	변경없음
	허브원	f	f	16	3,500	-	3,500	-	-	-	-	-	-	변경없음
	생태습지원	i	i	16	6,132	-	6,132	-	-	-	-	-	-	변경없음
	관찰데크	j	j	16	543	-	543	-	-	-	-	-	-	변경없음
	탐방로	k	k	지구내	1,596	-	1,596	-	-	-	-	-	-	변경없음
소계	-	-	-	13,871	감)176	13,695	938	감)47	891	1,457	감)47	1,410	-	
편의 시설	전망대	g	-	-	36	감)36	-	-	-	-	-	-	-	폐지
	휴게음식점	l	l	16	100	-	100	36	-	36	36	-	36	변경없음
	주차장1	m-1	m-1	16	4,890	-	4,890	-	-	-	-	-	-	변경없음
	주차장2	m-2	m-2	7-1	3,156	-	3,156	-	-	-	-	-	-	변경없음
	주차장3	m-3	m-3	16-3	226	증)841	1,067	-	-	-	-	-	-	변경
	주차장4	m-4	m-4	16-5	20	-	20	-	-	-	-	-	-	변경없음
	화장실및샤워장	n	n	16	228	-	228	70	-	70	70	-	70	변경없음
	실내취사장	o	o	16	123	-	123	30	-	30	30	-	30	변경없음
	소계	-	-	-	8,779	증)805	9,584	136	-	136	136	-	136	-
공원 관리 시설	태양광패널1	h-1	h-1	16	241	-	241	-	-	-	-	-	-	-
	태양광패널2	h-2	-	-	841	감)841	-	-	-	-	-	-	-	폐지
	창고	p	p	16-5	120	-	120	70	-	70	70	-	70	변경없음
	비지터센터	q	q	16-5	2,130	-	2,130	556	-	556	556	-	556	변경없음
	입구광장1	r-1	-	-	426	감)426	-	-	-	-	-	-	-	시설종류변경
	입구광장2	r-2	-	-	474	감)474	-	-	-	-	-	-	-	시설종류변경
	입구광장3	r-3	-	-	223	감)223	-	-	-	-	-	-	-	시설종류변경
	오수처리장	t	t	16	230	-	230	-	-	-	-	-	-	변경없음
	급수시설	u	u	7-3	1,975	-	1,975	-	-	-	-	-	-	변경없음
	관리사무소	v	v	16	78	-	78	48	-	48	48	-	48	변경없음
	도로	-	-	지구내	4,159	감)4,159	-	-	-	-	-	-	-	시설종류변경
보도	-	-	지구내	2,819	감)2,819	-	-	-	-	-	-	-	시설종류변경	
소계	-	-	-	13,716	감)8,942	4,774	674	-	674	674	-	674	-	
조경 시설	잔디밭1	s-1	s-1	13	282	-	282	-	-	-	-	-	-	변경없음
	잔디밭2	s-2	s-2	16-6	69	-	69	-	-	-	-	-	-	변경없음
	데크길1	w-1	-	-	184	감)184	-	-	-	-	-	-	-	폐지
	데크길2	w-2	-	-	10	감)10	-	-	-	-	-	-	-	폐지
	데크길3	w-3	w-1	16	462	증)25	487	-	-	-	-	-	-	변경
	소계	-	-	-	1,007	감)169	838	-	-	-	-	-	-	-
녹지		-	-	-	66,771	증)474	67,245	-	-	-	-	-	-	변경

3) 건축물 조서(변경)

구분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동수(층수)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합 계		3,839	12(2)	-	1,748	2,267	-
변경	합 계		3,767	10(2)	-	1,701	2,220	-
기정	교양시설	목재문화체험관	866	1(2)	RC조	831	1,350	변경없음
기정	교양시설	목공체험실	122	1(1)	경량철골조	60	60	변경없음
기정	교양시설	목공전시관	36	1(1)	목구조	32	32	시설폐지
변경	교양시설	목공전시관	-	-(-)	-	-	-	
기정	교양시설	트리하우스	36	1(1)	목구조	15	15	시설폐지
변경	교양시설	트리하우스	-	-(-)	-	-	-	
기정	편익시설	휴게음식점	100	1(1)	RC조	36	36	변경없음
기정	편익시설	화장실 및 샤워장	228	2(1)	RC조	70	70	변경없음
기정	편익시설	실내취사장	123	1(1)	RC조	30	30	변경없음
기정	공원관리시설	창고	120	2(1)	RC조	70	70	변경없음
기정	공원관리시설	비지터센터	2,130	1(1)	RC조	556	556	변경없음
기정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소	78	1(1)	RC조	48	48	변경없음

4)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구분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29	감)31	1,598	6,978	감)93	6,885	
도로	소로1류	77	-	77	1,202	-	1,202	변경없음
	소로3류	480	-	480	2,957	-	2,957	변경없음
보도		1,072	감)31	1,041	2,819	감)93	2,726	변경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	-	1,629	6,978	-	-	-	-
변경	합계		-	-	1,598	6,885	-	-	-	-
기정	소로(5개 노선)		-	-	557	4,159	-	-	-	-
기정	소로	1	1	10.3	34	774	진입도로	접근로	소로1-2	변경없음
기정	소로	1	2	10	43	428	시설연결	소로1-1	주차장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	6	70	444	시설연결	소로1-2	비지터센터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2	6	378	2,284	진입도로	소로1-1	위생처리장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5	6	32	229	시설연결	소로3-2	주차장	변경없음
보도(13개 노선)			-	-	1,041	2,726	-	-	-	-
기정	보도	3	4	2	42	106	보도	주차장	입구광장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5	2	95	236	보도	입구광장	관찰데크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6	2	36	93	보도	입구광장	보3-8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7	2	63	161	보도	보3-8	관찰데크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8	2	38	98	보도	주차장	보3-9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9	2	70	181	보도	관찰데크	보3-2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11	2	258	648	보도	관찰데크	보3-2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12	3	134	402	보도	소로3-2	관찰데크	선형, 면적 및 연장 변경
변경	보도	3	12	3	103	309	보도	데크길	관찰데크	
기정	보도	3	13	1.8	40	73	보도	보3-12	입구광장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14	3	78	235	보도	보3-12	비지터센터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15	2.2	42	91	보도	소로3-2	소로3-2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16	3.3	159	453	보도	보3-15	보3-15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17	2.4	17	42	보도	보3-16	보3-16	변경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2-89호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의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정 선 군 수

가. 정비사업명칭 및 정비구역 (변경 없음)

- 1) 정비사업명칭 : 봉양·애산주거환경개선사업
- 2) 정비사업 시행자 : 정선군수
- 3)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양·애산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	172,720	동측(92,800m ²) 서측(79,920m ²)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2,720	-	172,720	100.0	
현지개량	135,552	증) 3,051	138,603	80.2	
주거·근린생활용지	135,552	증) 3,051	138,603	80.2	
공공시설용지	37,168	감) 3,051	34,117	19.8	
도로	28,608	감) 1,216	27,392	15.9	
공공주차장	5,090	감) 1,835	3,255	1.9	
다목적광장	1,970	-	1,970	1.1	
어린이공원	1,500	-	1,500	0.9	

다. 도시계획시설(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1) 도로 (변경)

○ 본 사업대상지 내의 군계획시설로 도로 23개 노선(중로 2개 노선, 소로 21개 노선)에서 26개 노선(중로 2개 노선, 소로 24개 노선)으로 변경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164	중로1-1	소로3-55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276	중로3-5	중로3-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	295	중로3-5	소로1-2	일반 도로	제일교회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2	8	8	국지	272	중로1-1	중로3-1	일반 도로	보건소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	120	소로2-1	소로2-2	일반 도로	봉양초교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	190	중로1-1	중로3-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4	6	국지	51	중로1-1	소로2-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7	6	국지	84	소로2-8	소로3-9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8	6	국지	141	중로1-1	소로2-2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12	6	국지	51	소로3-5	소로2-8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45	6	국지	118	소로2-1	소로2-2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47	6	국지	67	소로2-8	소로3-9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10-46호	
기정	소로	3	49	6	국지	74	소로3-9	소로3-1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1,957	제2호 광장	덕송리 구역계	일반 도로	정선역	강원도고2003-98호	
변경	중로	1	1	20~29	주간선	1,957	제2호 광장	덕송리 구역계	일반 도로	정선역	강원도고2018-229호	
기정	중로	3	5	12	집산	681	애산리436	소로2-2	일반 도로	금광 아파트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중로	3	5	12	집산	243	중로 3-1	중로1-1	일반 도로	금광 아파트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50	역전광장	소로2-1	일반 도로	농협 판매장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1	1	10	국지	50	중로1-1	소로2-1	일반 도로	농협 판매장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399	중로1-1	중로3-5	일반	봉양초교	정선군고시2003-41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	316	중로1-1	소로3-4	일반도로	봉양초교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	50	중로1-1	소로2-1	일반도로	조양강변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2	6	8	국지	48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조양강변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11	8	국지	381	소로1-4	소로2-8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2	11	8	국지	150	소로3-11	소로3-12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	108	중로1-1	소로2-2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1	6	국지	91	중로1-1	소로2-2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302	중로2-3	중로3-5	일반도로	감리교회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5	6	국지	199	소로3-33	소로1-12	일반도로	감리교회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9	6	국지	255	중로1-1	소로2-11	일반도로	제일교회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9	6	국지	256	중로1-1	소로2-11	일반도로	제일교회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11	6	국지	369	소로1-4	소로1-10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1	23	4~10	국지	340	소로1-4	소로2-11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20-240호	
기정	소로	3	19	6	국지	99	소로2-1	소로3-1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19	6	국지	99	소로2-1	소로3-1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29	6	국지	53	소로1-2	소로3-11	일반도로	미락정가든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29	5~6	국지	53	소로1-2	소로3-11	일반도로	미락정가든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33	6	국지	54	중로1-1	소로3-5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33	6	국지	52	중로1-1	소로3-1	일반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2) 어린이공원 (변경없음)

○ 본 사업대상지 내의 군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 1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나 본 계획으로 인한 면적 변경은 없음

가) 어린이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애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애산리 432-201일원	1,500	-	1,500	85. 12. 14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로개설계획) (변경)

1) 도로개설계획 (변경)

구분	규 모				개설 및 미개설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m²)			
					계	개설	미개설	계	개설	미개설	
기정	합 계				3,554	638	2,916	28,608	4,450	24,158	
변경					3,292	3,292	-	28,608	27,392	1,216	
기정	중로	1	1	20	255	-	255	5,100	-	5,100	사업시행계획 기수립
변경					255	255	-	5,100	5,100	-	
기정	중로	3	5	12	332	-	332	3,984	-	3,984	
변경					193	193	-	2,594	2,594	-	
기정	소로	1	12	10	-	-	-	-	-	-	
변경					139	139	-	1,390	1,390	-	
기정	소로	1	1	10	28	-	28	280	-	280	
변경					28	28	-	280	280	-	
기정	소로	2	1	8	399	-	399	3,192	-	3,192	노선축소
변경					399	316	83	3,192	2,528	664	
기정	소로	2	3	8	194	194	-	1,552	1,552	-	
변경					194	194	-	1,552	1,552	-	
기정	소로	2	4	8	295	-	295	2,360	-	2,360	
변경					295	295	-	2,360	2,360	-	
기정	소로	2	6	8	29	-	29	232	-	232	
변경					29	29	-	232	232	-	
기정	소로	2	8	8	117	117	-	936	936	-	
변경					117	117	-	936	936	-	
기정	소로	2	11	8	32	-	32	256	-	256	
변경					32	32	-	256	256	-	
기정	소로	3	1	6	108	-	108	648	-	648	노선축소
변경					108	91	17	648	546	102	
기정	소로	3	2	6	120	-	120	720	-	720	
변경					120	120	-	720	720	-	
기정	소로	3	3	6	156	-	156	936	-	936	
변경					156	156	-	936	936	-	

구분	규 모				개설 및 미개설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m²)			
					계	개설	미개설	계	개설	미개설	
기정	소로	3	4	6	30	-	30	180	-	180	
변경					30	30	-	180	180	-	
기정	소로	3	5	6	257	160	97	1,542	960	582	노선축소
변경					257	199	58	1,542	1,194	348	
기정	소로	3	7	6	84	-	84	504	-	504	
변경					84	84	-	504	504	-	
기정	소로	3	8	6	111	-	111	666	-	666	
변경					111	111	-	666	666	-	
기정	소로	3	9	6	123	63	60	738	378	360	
변경					123	123	-	738	738	-	
기정	소로	3	11	6	260	-	260	1,560	-	1,560	소로 3-11호선에서 변경
변경	소로	1	23	6	260	260	-	1,560	1,560	-	
기정	소로	3	12	6	51	51	-	306	306	-	
변경					51	51	-	306	306	-	
기정	소로	3	19	6	99	-	99	594	-	594	
변경					99	99	-	594	594	-	
기정	소로	3	29	6	53	53	-	318	318	-	
변경					53	53	-	318	318	-	
기정	소로	3	33	6	22	-	22	132	-	132	
변경					22	22	-	132	132	-	
기정	소로	3	45	6	118	-	118	708	-	708	기정면적 오차
변경					118	118	-	708	708	-	
기정	소로	3	①	3	94	-	94	282	-	282	기존도로 확포장
변경					94	60	34	282	180	102	
기정	소로	3	②	6	67	-	67	402	-	402	소로3-47
변경					67	67	-	402	402	-	
기정	소로	3	③	4	70	-	70	280	-	280	소로3-49
변경					70	70	-	280	280	-	
기정	소로	3	④	4	50	-	50	200	-	200	기존도로 확포장
변경					50	50	-	200	200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60	감)2,060	6,500	-	
어린이공원	애산리 432-201일대	1,500	-	1,500	-	조합놀이대, 모래사장, 광장,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등
소 계		5,090	감)2,060	3,030	-	158대
공공주차장1	봉양리415-103일대	1,430	-	1,430	-	30대
공공주차장2	애산리432-442일대	1,600	-	1,600	-	52대
공공주차장3	애산리432-203일대	2,060	감)2,060	-	-	폐지
소 계		1,970	-	1,970	-	
다목적광장	봉양리 58-1일대	1,970	-	1,970	-	운동, 휴게, 전시·판매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적 용 기 준	동수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계		598	341	100.0	
존치대상	신축건물 또는 양호 건축물	98	106	31.1	
철거대상	노후 불량	63	15	4.4	
개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노후불량정도와 소유주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포함)	124	51	14.9	
수선대상	상기 이외의 건물 노후불량 건축물중 철거·개축 대상이 아닌 건축물	313	169	49.6	

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1) 현지개량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획 지		
기정	1	현1 ~ 현25	현1-1~ 현25-37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 예외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변경	1	현1 ~ 현26	현1-1~ 현26-13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 예외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2) 공공시설용지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획 지		
기정	1	주	주1~3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변경	1	주	주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1	광	광1	지정용도	· 다목적광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1	공1	공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아.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변경 없음)

- 공공시설 설치로 철거되는 주택으로 인해 감소 하게되어 본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는 없으며 철거주택 거주세대는 인근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수용토록 계획

자.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기정 2005년 ~ 2010년

- 변경 2005년 ~ 2022년

2)정비사업시행방법

- 현지 개량 사업

- 단독개량(단독주택)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

- 공동개량(다가구, 다세대주택) :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 시행

- 공공시설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어린이공원, 공공주차장, 다목적광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정선군이 사업시행

차. 관계도서 : 실음 생략

카. 관계도서 및 세부내역은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에 보관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주택팀 (☎ 033-560-2472)로 문의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733호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0조 ~ 제15조)
- 나.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안 제23조)
- 다. 일본어 투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를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을”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장치에 의하여”를 “장치를 통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작성함에 있어”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장제2절(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무를 통할”을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획관,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소장이”를 “직제상 국·관·과·소장 순으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8조제2항”을 “영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이”를 “팀장으로”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법 제28조의 규정”을 “법 제35조”로, “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를 “관·과·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등에 있어”를 “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을 “제1항에 따라 정한”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을 “팀장을”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제56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59조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61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관부서”라 함은 <u>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u> 및 <u>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u>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	4. ----- <u>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u> ----- ----- ----- ----- -----.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u>등에 대하여</u> 최종결재전에 기획관이 제6조 및 <u>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u>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 ----- <u>등을</u> ----- ----- <u>제7조에 따라</u>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u>장치에 의하여</u>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 ----- - <u>장치를 통해</u> ----- ----- -----.
제3조(입법안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u>작성함에 있어</u> 어	제3조(입법안 작성) ①----- ----- <u>작성하는 경우</u> -----

현행	개정안
려운 속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사전협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도 또는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정선군 조례·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협의) ① ----- ----- 따라 ----- ----- ----- ----- -----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 -----. ②제1항에 따른 ----- ----- ----- 제3조에 따라 ----- ----- ----- ----- -----. 제5조(입법예고) ----- ----- 「정선 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 -----.
제6조(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심사) ①----- 제3조에 따라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 ----- 따른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완 및 반려)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결과통보 등) ① (생략)	제9조(결과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기획관에게 심의회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u>따른</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연서대상 공표) ① 총무행정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 <u>영</u> ”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관할구역안의 19세이상 주민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수)와 그 총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서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도보·군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1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총무행정관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	<삭 제>

현행	개정안
<u>증명서 교부신청(이하 “교부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신청서 원본을 주 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총무행정관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기획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u> <u>③총무행정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임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u>	

현행	개정안
<u>기획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제12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u> <u>제13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u> <u>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간, 군에서는 명부 전체를 읍·면에서는 당해 읍·면의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동안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군 관 할구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 기간내의 서명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별지 제8호서식)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이 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기획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제14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삭 제>

현행	개정안
<u>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②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정 요청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요건 심사에 관한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u> <u>제15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8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청구인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조례안) 및 당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u> <u>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하되, 그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u>1. 조례안 :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내용에 따라 작성</u> <u>2. 검토의견서 :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작성</u> <u>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의 결을 거친 조례안에 검토 의견서를 덧붙여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u> 제16조(구성) ① 심의회의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담당관·과장·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구성) ① ----- ----- ----- --. <단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열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9조(의안제출) ① (생략) ②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제안설명) ①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주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 ----- ----- ----- 직제상 국·관·과·소장 순으로 ----- -----. 제18조(심의회의 기능) ----- 열 제28조제1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제안설명) ①----- ----- 팀장은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21조(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 담당인, 서기는 법무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생략)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 ④기획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조례안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이 원안과 다르게 의결되었을 경우 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기획관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공포안 작성) ① (생략) ②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간사 등) ①----- ----- ----- <u>팀장으로</u>-----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라</u> ----- ----- <u>법 제35조</u>----- ----- ----- ----- <u>법 제32조제3항에 따라</u> ----- -----. ⑤----- ----- <u>법 제35조에 따라</u> ----- -----. 제24조(공포안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제23조제5항에 따라 ----- -----

현행	개정안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기획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을 받아 이를 수정·확정하고 기획관에게 통보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1. ~ 3. (생략) 제29조(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실판단에 <u>의하여</u>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 10. (생략) 제30조(회시) ① (생략) ②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관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읍·면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u>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u>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기획감사</u>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질의문 반려) ----- ----- -----. 1.·2. (현행과 같음) 3. ----- <u>따라</u> ----- ----- 4. ~ 10.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29조에 따라</u> --- ----- -----. 제32조(심사대상) ----- ----- ----- <u>기획관</u>-----

현행	개정안
<u>실장의 심사를</u>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제41조(소송의 수행)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u>실·과·소</u>에 관련되는 소송 2. 3. (생략) 제43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생략) ②제1항에 <u>의한</u>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 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u>등에 있어</u>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소송의 착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	-----.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소송의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관·과·소</u>----- ----- 2. 3. (현행과 같음) 제43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따른</u> ----- ----- ----- ----- <u>등을</u> <u>하는 경우</u> ----- --. 제44조(소송의 착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u>따라 정한</u> ----- ----- ----- ----- -----.

현행	개정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② (생략) ③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주사를 포함 하여 2인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지정·지명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4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기획관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4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생략) ②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4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팀</u> <u>장을</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 <u>따</u> <u>라</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u>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u> 2. ~ 5. (생략) 제5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u>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u> 제59조(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u>수행함에 있어서는</u> 사전에 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u>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	<u>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u> 2. ~ 5. (현행과 같음) 제5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는 경우</u> ----- ----- ----- -----. 제59조(사전협의 등) ----- ----- ----- <u>수행하는 경우에</u> ----- ----- -----. 제61조(국가소송의 수행) ----- ----- ----- ----- <u>규칙에 따른다.</u>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
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
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
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
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
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734호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 나. 의견 제출 방법(안 제5조)
- 다.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 반영(안 제7조 ~ 제8조)
- 라.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 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 이

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의견제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735호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대금지 규정 삭제(안 제1조 ~ 안 제2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양도·전대(轉貸)”를 “양도”로 한다.

제2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양도·전대(轉貸)”를 “양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 책임)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 2. (생 략) 3. 담보제공이나 <u>양도 · 전대(轉貸)</u> 금지 4. · 5. (생 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 · 책임)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양도</u> ----- ----- 4. · 5.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 2. (생 략) 3. 담보제공이나 <u>양도 · 전대(轉貸)</u> 금지 4.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책임)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양도</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2-736호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1. 정선군 고시 제2020-290호(2020. 12. 24.)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읍 애산리 415-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조성
- 2)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시행	
주차장	노외주차장	2,282㎡	2,282㎡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2. 6. 24. ~ 2022. 7. 8.)

사. 공람장소 : 도시과(☎033-560-247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애산리	413-28	대	64	64		정선군			
2	정선읍 애산리	415-98	전	34	34		국(국토교통부)			
3	정선읍 애산리	413-29	대	87	87		정선군			
4	정선읍 애산리	415-99	전	82	82		정선군			
5	정선읍 애산리	413-7	철	4,051	13		국(국토교통부)			
6	정선읍 애산리	413-30	대	114	114		정선군			
7	정선읍 애산리	415-7	대	222	222		정선군			
8	정선읍 애산리	415-82	도	16	16		정선군			
9	정선읍 애산리	413-31	대	85	85		정선군			
10	정선읍 애산리	415-8	대	195	195		정선군			
11	정선읍 애산리	415-80	도	19	19		정선군			
12	정선읍 애산리	415-81	대	61	61		국(국토교통부)			
13	정선읍 애산리	413-32	잡	59	59		정선군			
14	정선읍 애산리	414-3	전	50	50		정선군			
15	정선읍 애산리	415-79	전	92	92		정선군			
16	정선읍 애산리	413-33	대	94	94		정선군			
17	정선읍 애산리	413-14	대	671	671		정선군			
18	정선읍 애산리	415-78	대	65	65	정선읍 북설리 746-6 미소빌아파트 309	정운봉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1 대치빌딩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	근저당권 설정
19	정선읍 애산리	413-34	대	117	117		국(국토교통부)			
20	정선읍 애산리	413-23	대	30	30		정선군			
21	정선읍 애산리	415-77	대	112	112		정선군			
계				6,320	2,282					

정선군 공고 제2022-818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운영안 입법예고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직제 개편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반영하여 위원장 직위 변경 및 해당 업무 주관 과장 및 팀장 등을 포괄명시

2. 주요내용

- 위원장 직위 변경 및 부위원장 부서 포괄 명시(안 제2조)
 - 위 원 장 : 당초(부군수) → 변경(해당업무 주관부서 관장 국장)
 - 부위원장 : 당초(안전건설과장) → 변경(주관부서 과장)
- 담당급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0조)
 - 간 사 : 당초(토목담당) → 변경(주관부서 업무 팀장)

3. 개정 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7. 6 ~ 2022. 7. 26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건설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485), 팩스(033-560-2099)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훈령 제 호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해당업무 주관부서를 관장하는 국장이”로, “안전건설과장”을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토목담당”을 “주관부서 업무 팀장”으로, “토목업무”를 “주관부서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 위원장은 <u>안전건설과장</u> 이 된다. ③ ~ ⑦ (생 략)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업무 주관부서</u> <u>를 관장하는 국장이</u> ----- ----- <u>주관부서 과장</u>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등) ① (생 략) ② 간사는 <u>토목담당</u> 이 되고 서 기는 <u>토목업무</u> 주무관이 된다. ③ (생 략)	제10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주관부서 업무 팀장</u> - --- <u>주관부서 업무</u>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⑧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⑨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 ⑩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